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① 이메일: Support.vfskcollection@volvo.com
 - ② 우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0, 2층 불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③ 팩스: 02-3780-9169
- *작성방법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번호(☎02-3780-916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인*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대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장 6개월 ▶ (거치기간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검토후 처리 (심사/채권부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 인하 요구권 내부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료 감면 ▶ 전액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일부)감면

※고객의 변제능력이 상향되었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되어야 하며, 향후 변제능력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채무조정 요청은 거절될 수 있음.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p>(채무자)</p> <p>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p>	<p>(채권금융회사)</p> <p>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p>	<p>(채무자)</p> <p>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p>	<p>(채권금융회사)</p> <p>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p>	<p>(채무자)</p> <p>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p>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p>■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p>■ 법원의 개인회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p>■ 법원의 개인파산·면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무조정 요청서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채무조정 요청대상

채권금융회사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불보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채무조정 요청사유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1.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
 - ◇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채무조정요청서 2.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치 동의서 3.채무조정안 4.변제능력 입증자료
-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고객센터(☎1688-9328)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귀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_____ (인)

채무조정안

신청인 기본정보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직업	월평균 소득(A)	월평균 생계비(B)	금융비용(C) (타 대출 상환액)	가용소득 (D)
				(D) = (A)-(B)-(C)

※ 월평균 소득(A)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
 월평균 생계비(B)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채무조정 요청대상

채권금융회사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불보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채무조정 요청사항

(단위 : 원)

구분		조정 내용	
		희망 유예기간	
상환 유예	(Y / N)	개월	
		이자율	
이자율 인하	(Y / N)	채무조정 전	채무조정 후
		원금	
원금 감면	(Y / N)	채무조정 전	채무조정 후
이자 감면	(Y / N)	<input type="checkbox"/> 연체이자 감면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기타 사항	(Y / N)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_____ (인)

개인정보(신용)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수집·이용 목적	회사와 체결된 계약 관련 채무조정 신청에 대한 상담, 심사, 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정보(2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개인(신용)정보(40개): 일반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여신성거래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정보, 재산정보 등), 공공정보(개인신용평점 등)

2. 조회에 관한 사항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조회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SCI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나이스디앤비(주), 이크레더블(주)
조회 목적	회사와 체결된 계약 관련 채무조정 신청에 대한 상담, 심사, 이행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채무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채무조정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 (단,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조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정보(2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개인(신용)정보(40개): 일반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여신성거래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정보, 재산정보 등), 공공정보(개인신용평점 등)

3. 제공에 관한 사항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사)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조회업무 수행·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수행
제공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정보(2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개인(신용)정보(31개): 일반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여신성거래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정보, 재산정보 등)

(2) 업무처리 수탁업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제공받는 자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름
제공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정보(2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개인(신용)정보(16개): 일반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여신성거래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정보, 재산정보 등)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_____ (인)